

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7. 23.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19. 7. 15. 이흥민 의원 외 9명
- 나. 회부일자 : 2019. 7. 18.
- 다. 상정일자 : 제232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19. 7. 23.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복지도시위원회 권영숙 의원

가. 제안이유

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 및 효행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기여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1) 조례 제정 목적 및 효, 효행, 부모, 경로, 효문화 등 용어를 정의
(안 제1조 ~ 안 제2조)
- 2) 효행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(안 제3조)
- 3) 효행 지원사업의 범위 및 지도·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
(안 제4조 ~ 안 제5조)

- 4) 효의 달 지정을 규정(안 제6조)
- 5) 효행자 표창 및 격려금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
(안 제7조 ~ 안 제8조)

3. 검토보고 (최종익 전문위원)

가. 제안경위 및 제정취지

- 동 조례안은 2019년 7월 15일 이흥민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의안번호 제96호로 2019년 7월 18일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되어 상정된 안건임.
- 제정취지는 효행문화와 경로사상을 장려함으로써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고자 각종 효행 사업의 지원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 검토의견

(1) 조례제정 필요성 검토

- 통계청 발표¹⁾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접수 건수가 2014년 3,532건에서 매년 증가하여 2018년 5,188건으로 2014년 대비 1,656건 31.9% 증가하고 노인학대로 인한 상담 건수 또한 동일 대비 시 30,283건 29.6% 증가하여 노인 학대실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.

〈표 1〉 연도별 노인 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 건수(2019.7.10. 전국 기준)

구 분	2014	2015	2016	2017	2018
학대사례 신고접수 건수	3,532	3,818	4,280	4,622	5,188
학대상담 횟수	71,889	78,368	82,468	88,919	102,172

(출처: 통계청 국가통계포털)

1) 국가통계포털 노인학대 연도별 신고접수 및 상담횟수(<http://kosis.kr/index/index.do>)

- 국회에서는 이미 2007.8.3.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부모에 대한 효 의식을 되살리기 위하여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하고,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,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자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약칭: 효행장려법)을 제정하였음.
-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가 2010.1.7. 「서울특별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한 이후, 서울특별시 강남구, 광진구 등 22개 구를 비롯해 경기도, 부산광역시 등 총 129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음.
- 따라서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려는 동 제정 조례안의 제안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됨.

(2) 조례조문 주요내용 검토

- 본 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으로는 구청장에게 학교 등에서 효행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, 지원할 수 있는 효행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며, 효행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매년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 운영하여 효행우수자에 대해 표창하고, 만 100세 이상 노인의 부양자에게 효행 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3조의 효행교육과 제4조의 효행 사업 지원, 제6조의 효의 달 지정 그리고 제7조의 효행자 표창 및 제8조의 효행 지원 등의 주요 조문은 상위법인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한 바, 전체적 조례 체계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금번 조례가 제정된다면 만 100세 이상 노인의 부양자에게 효행 격려금품을 지원할 수 있음에 따라, 대상자 격려 시 현금 또는 물품과 1인 지급의 상당액 범위, 그리고 만 100세 도래 시 1회

지급 아니면 100세 이상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지급할 것인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.

〈표 2〉 자치구 효행장려금 매년 지급 현황(2019년 7월, 조례 기준)

구 분	계	20만원 이내	20만원	비고
지급 자치구 수	7개구	4개구 (종로, 양천, 영등포, 송파구)	3개구 (서대문, 은평, 강동구)	미지급 15개구 ※조례제정: 22개구

〈표 3〉 마포구 만 100세 이상 노인 현황(2019.6.30. 기준)

총	100세	101~104세	105~109세	110세이상	비고
314명	38명	90명	89명	97명	314명 [남 74, 24%, 여 240, 76%]

〈표 4〉 마포구 만 99세~95세 노인 현황(2019.6.30. 기준)

총	99세	98세	97세	96세	95세
350명	30명	63명	56명	108명	93명

(출처: 마포구 행정포털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 타 : 없음